보도자료 2011. 1. 25.(화)	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	
	담당 부서	사법등기국
	담당자	사법등기심의관 김현보 (☏3480-1374)
	공보관실 ☏ 3480-1451	

2011년 12월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

○ 대법원은 2009년 12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을 2011년 1월 20일자로 개정하여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

○ 개정 법률 및 규칙에 따른 일부사항증명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가 제한 없이 현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

○ 개정 규칙에 따르면,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배제한 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되,

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서임을 명시하도록 하였음

○ 일부사항증명서에서 배제되는 사항은 증명서별로 다음과 같음

- 기본증명서 : 기아발견, 인지, 친권·후견 종료, 실종선고취소, 국적취득, 성·본 창설 및 변경, 개명, 가족관계등록창설
- 가족관계증명서 :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, 사망한 자녀
- 혼인관계증명서 : 혼인취소, 이혼
- 입양관계증명서 : 입양취소, 파양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친양자입양취소, 친양자파양

○ 향후 일부사항증명서의 도입으로 “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을”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참고 - 관련 조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제14조(증명서의 교부 등)
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.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)
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○ 첨부 - 일부사항증명서 예시

첨부 1 -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본양식

혼 인 관 계 증 명 서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○○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金本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1234567	남	●●

혼인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배우자	박여인(朴女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2345678	여	○○

구분	상 세 내 용
혼인	[신고일] 1986년 01월 01일 [배우자] 전여인
이혼	[협의이혼신고일] 1987년 04월 04일 [배우자] 전여인
혼인	[신고일] 2008년 02월 01일 [배우자] 박여인 [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] 65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중구

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 직인

첨부 2 -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

혼 인 관 계 증 명 서 (일 부 사 항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○○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김본인(金本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1234567	남	●●

혼인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배우자	박여인(朴女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2345678	여	○○

구분	상 세 내 용
혼인	[신고일] 2008년 02월 01일 [배우자] 박여인 [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] 650101-2345678 [처리관서] 서울특별시 중구

위 혼인관계증명서(일부사항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 직인

※ 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**일부사항**에 대하여 발급한 증명서로서 기록사항 전체에 대하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3 -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양식

가 족 관 계 증 명 서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○○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박여인(朴女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2345678	여	○○

가족사항
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박철수(朴哲洙)	1946년 01월 01일	460101-1234567	남	○○
모	강순덕(姜順德)	1946년 01월 01일	460101-2345678	여	◎◎

배우자	김본인(金本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1234567	남	●●

자녀	이일남(李一男)	1988년 01월 01일	880101-1234567	남	◇◇
자녀	김이남(金二男) 사망	1990년 01월 01일	900101-1234567	남	●●
자녀	김삼녀(金三女)	1992년 01월 01일	920101-2345678	여	●●

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 직인

첨부 4 -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

가 족 관 계 증 명 서 (일 부 사 항)

등록기준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○○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박여인(朴女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2345678	여	○○

가족사항
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박철수(朴哲洙)	1946년 01월 01일	460101-1234567	남	○○
모	강순덕(姜順德)	1946년 01월 01일	460101-2345678	여	◎◎

배우자	김본인(金本人)	1965년 01월 01일	650101-1234567	남	●●

자녀	김삼녀(金三女)	1992년 01월 01일	920101-2345678	여	●●

위 가족관계증명서(일부사항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(읍·면)장 ○ ○ ○ 직인

※ 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**일부사항**에 대하여 발급한 증명서로서 기록사항 전체에 대하여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